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5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13.
3. 회 부 일 : 2025.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위투표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저지른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姓名을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を 偽造・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고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위투표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등 사위(詐僞)¹⁾의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법 제248조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1)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표준국어대사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²⁾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하여 고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³⁾ 사위투표 적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사위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선거원칙인 ‘1인 1표’, 즉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동시에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저지른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연합뉴스(2023.1.13.) “사전투표했는데 또 투표 시도…선거법 위반 60대 벌금형 집유”

3) KBS뉴스, “선관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고발…‘신뢰 깃뚫는 중대 범죄’”, 2025.5.30.

《 현행 및 개정안의 사위투표에 대한 처벌 수준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위투표시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u>7년 이하</u> 의 징역 - <u>7천만원 이하</u> 의 벌금
선거사무관련자의 사위투표시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 <u>10년 이하</u> 의 징역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를 통해 사위투표 시도를 감소시켜 유권자의 민의가 선거과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대로 형량을 상향하는 경우 법 제249조의 투표위조 또는 증감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과 최대형량이 동일해지게 되는 바,⁴⁾ 사위투표가 1표 또는 소수의 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투표위조 또는 증감은 선거 결과를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왜곡할 수도 있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양자에 대해 동일한 최대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위투표죄(법 제248조)와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법 제249조)의 비교 》

구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행위 내용		- 성명 사칭, 신분증 위·변조 -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 가짜 투표지 생성 등 투표 위조행위 - 득표수 조작 등 표의 수 증감
선거 영향		- 1인 또는 소수의 표 행사 왜곡 - 선거결과에 대한 제한적 영향	- 다수의 표 행사 왜곡 가능 - 선거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
처벌 수위 (현행법 기준)	일반인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 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사위투표죄보다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최대형량이 높게 설정되었는데, 이는 후자를 전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위투표죄의 최대형량을 상향하면서도 이를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최대형량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량 상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최대형량 설정 관련 입법의도,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5) 다만,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가 1년 또는 3년의 최소형량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 일반인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위투표죄의 최대형량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가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위투표죄는 선거과정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국민 전체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